

진동방지형 점검등 규격, 시방서 (SMG-BR500)

1. 일반사항

1.1 적용범위

본 등기구는 교량 점검통로 내부에 설치하는 등기구에 적용한다.

1.2 분류

모델명	규격		비고
	적용 규격	형태	
SMG-BR500	~EL30W까지	점검용 백열등기구	

1.3 참조규격

1.3.1 특허(0536566), 조달청우수제품지정(2009098), 성능인증(15-419),
전기용품안전인증(HH11473-8001)

1.3.2 한국산업규격(KS)

- KS C 7501 백열등전구(일반조명용)
- KS C IEC 60227-5 유연성 비닐케이블(한국표준협회)
- KS C 7601 삼파장전구 (일반조명용)
- KS C 8302 소켓

1.4 제출물

1.4.1 제작 상세도

-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제작 전에 제작도 등을 감독원에 제출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(1) 조달청우수제품지정, 성능인증,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
 - (2) 제품 자료 : 등기구의 재질, 치수, 형태 등 제반사항
 - (3) 견 본 : 등기구 1개 씩
 - (4) 등기구 제작도면 : 등기구 규격,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.

1.5 타 공종과의 협조

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시 전기설비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2. 재 료

2.1 교량 내부 진동방지형 점검등기구 재질 (~IL100W, ~EL30W, 기타소형램프)

2.1.1 몸 체

- 고순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제작한다.
- 몸체 두께는 최소 2.5mm를 원칙으로 한다.

- 표면은 분채 도장하여 변형과 변색을 방지한다.
- 몸체와 보호망이 진동으로 쉽게 이탈 방지를 위해 잠금 고무를 부착한다.
- 등기구의 몸체에 완충부재가 흘러내리지 않게 잠금링을 설치한다.

2.1.2 진동방지형 소켓(Master-Mogul)

- 진동방지형 소켓의 완충부재는 내열성 방진 실리콘으로 몰드 성형 제작한다.
- 점검등의 내부구조는 진동방지 기능과 안전을 위하여 원주형 주름관을 다단으로 적층 한 내열성 실리콘 소재로 Mogul의 외측부위에 설치하여 원주방향과 상하 방향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내부구조로 형성되어야 한다.
- 소켓은 KS규격 C8302의 기준에 준한 E-26의 자기체 소켓을 사용한다.
- 진동방지형 소켓은 전(全)방위의 충격과 진동을 완충, 흡수하여 전구의 이탈과 램프의 파손을 방지해야한다.

2.1.3 브라켓 (벽부 취부 경우)

- Steel로 제작되어야 한다.
- 굴곡을 두 줄 이상 주어서 강도를 높여주어야 한다.
- 두께는 1mm를 원칙으로 한다.
- 표면처리는 분채 도장하여 변형이나 변색을 방지한다.

2.1.4 전 선

- VCTF 3C×1.0SQ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리드선의 인출길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.

2.1.5 볼트, 너트, 기타부품

- 모든 볼트, 너트, 기타부품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또는 STS 27종을 사용하여 산화 및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.

2.2 자재 품질관리

2.2.1 시험

- 진동방지형 점검등기구의 성능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시험항목	시험기준	판정기준
진동시험	진동주파수 : 30Hz 진폭 : 3 mm _{pp} 이상 축 : 상/하 진동 가진시간 : 30분 이상 시료상태 : 점등상태(정격전원인가상태)	소등되지 않을 것

2.2.2 반입자재 검수

-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.
-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.

2.3 현장 품질관리

2.3.1 점등시험

-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를 완료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2.3.2 시공상태 확인

-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- (1)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
 - (2) 등기구 고정 상태
 - (3) 등기구의 수평, 수직 상태
 - (4) 등기구 설치 후 램프의 풀림이나 파손상태

3. 하자보증기간

- 3.1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.